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31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2구합5528 재산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 [redacted]회사
피 고	[redacted] 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부과일자란에 행한 재산세 등 합계 72,001,36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31

원고는 [redacted]구 B 대 1,146㎡ 중 653.82㎡와 그 지상 건물 중 77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1996. 10. 2.부터 2013. 4. 19.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제1주장), ②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며(제2주장), ③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과세대상, 과세표준액, 적용세율 등 세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비과세대상 재산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등의 하자가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제3주장).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대표자이던 C이 2006. 5. 19.과 2006. 7. 3. 피고를 방문하여 원고의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2006. 7. 3.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31

2006. 8. 21. 위 체납액 중 20,000,000원을 납부하기도 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모든 발송내역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일부나마 위 처분의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되고, 달리 위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는바,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7. 4. 19.과 1997. 12. 1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지방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납세고지의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세액 산출근거는 납세의무자가 불복 여부를 판단, 결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그 기재의 누락 또는 산출근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기재미비나 오류는 과세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31

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세액의 산출근거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다거나 미비하게 기재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위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었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비과세대상 재산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는 절차상의 하자이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31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인진섭

판사 김두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31

[별지 11]

납세번호

과세처분내역

연번	세목명	당초			불세경정	경정(53.04㎡ 감액) 후			부과일자	경정일자
		본세	가산금	계		본세	가산금	계		
1	재산세(토지)	2,711,470	211,450	2,922,920	-235,760	2,475,710	602,000	3,077,710	2011.09.05	2013.2.14
2	재산세(건축물)	781,550	119,550	901,100		781,550	119,550	901,100	2011.07.07	
3	재산세(건축물)	126,430	3,770	130,200		126,430	3,770	130,200	2011.07.07	
4	구)재산세(토지)	2,665,000	275,360	2,940,360	-232,050	2,432,950	-85,080	941,660	2010.09.01	2013.2.14
5	구)재산세(건축물)	762,140	208,260	970,400		762,140	208,260	970,400	2010.07.06	
6	구)재산세(건축물)	117,410	3,510	120,920		117,410	3,510	120,920	2010.07.06	
7	구)재산세(토지)	2,665,000	282,710	2,947,710	-232,050	2,432,950	-115,770	1,262,640	3,695,590	2009.10.02
8	구)재산세(건축물)	754,350	201,290	955,640		754,350		201,290	955,640	2009.10.02
9	구)재산세(건축물)	113,490	3,380	116,870		113,490		3,380	116,870	2009.10.02
10	구)재산세(토지)	2,533,440	1,204,530	3,737,970	-221,540	2,311,900	-135,350	1,472,110	3,784,010	2008.06.08
11	구)재산세(건축물)	757,700	270,510	1,028,210		757,700		270,510	1,028,210	2008.06.08
12	구)재산세(건축물)	116,720	3,480	120,200		116,720		3,480	120,200	2006.06.08
13	구)재산세(토지)	1,499,060	970,630	2,469,690	-204,510	1,294,550	-136,940	860,220	2,154,770	2007.09.01
14	구)재산세(건축물)	821,050	227,480	1,048,530		821,050		553,820	1,374,870	2007.06.02
15	구)재산세(건축물)	934,350	605,450	1,539,800		934,350		605,450	1,539,800	2007.06.02
16	구)재산세(건축물)	150,480	4,490	154,970		150,480		4,490	154,970	2007.06.02
17	구)재산세(토지)	2,155,530	1,564,910	3,720,440	-236,230	1,919,300	-156,480	1,285,170	3,204,470	2006.08.05
18	구)재산세(건축물)	954,950	735,310	1,690,260		954,950		735,310	1,690,260	2007.07.05
19	구)재산세(토지)	1,885,910	1,452,700	3,338,610	-209,640	1,676,270	-143,670	1,156,610	2,832,880	2005.09.09
20	구)재산세(건축물)	879,670	409,500	1,289,170		879,670		409,500	1,289,170	2005.07.05
21	종합토지세	704,360	319,480	1,023,840		704,360		311,800	1,016,160	2004.10.02
22	재산세	1,147,900	633,380	1,781,280		1,147,900		633,380	1,781,280	2004.07.02
23	종합토지세	1,799,090	1,236,540	3,035,630	-189,240	1,609,850	-129,470	1,107,070	2,716,920	2003.10.02
24	재산세	1,097,870	605,680	1,703,550		1,097,870		605,680	1,703,550	2003.07.05
25	종합토지세	1,755,860	1,207,380	2,963,240	-184,990	1,570,880	-127,450	1,079,930	2,650,810	2002.10.02
26	재산세	1,083,530	772,990	1,856,520		1,083,530		772,990	1,856,520	2002.07.01
27	재산세	0	0	0		0		0	0	
28	종합토지세	1,937,450	1,331,660	3,269,110	-202,880	1,734,570	-139,150	1,192,510	2,927,080	2001.10.05
29	재산세	1,059,250	352,330	1,411,580		1,059,250		352,330	1,411,580	2001.06.05
30	종합토지세	1,880,320	1,446,400	3,326,720	-197,270	1,683,050	-151,460	1,294,940	2,977,990	2000.10.05
31	재산세	1,079,280	769,140	1,848,420		1,079,280		769,140	1,848,420	2000.06.05
32	종합토지세	1,833,980	1,411,090	3,245,070	-192,690	1,641,290	-148,230	1,262,860	2,904,150	1999.10.05
33	재산세	1,060,470	755,600	1,816,070		1,060,470		755,600	1,816,070	1999.06.04
34	종합토지세	1,918,330	1,475,910	3,394,240	-201,010	1,717,320	-154,670	1,321,240	3,038,560	1998.10.04
35	재산세	1,092,250	778,190	1,870,440		1,092,250		778,190	1,870,440	1998.06.02
36	종합토지세	1,550,770	1,192,930	2,743,700	-164,770	1,386,000	-126,450	1,066,480	2,452,480	1997.10.02
37	재산세	1,056,940	753,030	1,809,970		1,056,940		753,030	1,809,970	1997.06.01
38	종합토지세	1,435,540	1,104,970	2,540,510	-158,180	1,277,360	-50,060	437,820	1,715,180	1996.10.02
39	재산세(토지)	2,625,390	362,160	2,987,550		2,625,390		362,160	2,987,550	2013. 4. 19.
계		49,504,280	25,287,130	74,771,410	-3,062,800	43,816,090	-1,852,580	26,197,720	72,001,360	